

#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1121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수련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나.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원은 시에서 출연하고, 수련관 운영비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3. 2. 3. ~ 2003. 2.23.(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필(2003. 4.28)

##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214-1번지에 둔다.

**제3조 (사업)**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 사업
5. 기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본재산)** ① 제4조 제1항에 의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
  2.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경비)** ① 수련관의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수련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단위사업의 위탁) ①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련관에 단위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감독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수련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매년 수련관 사업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여성과
임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여성과장 최 병 덕
안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담당 진 영 인
자	담당자 성명·전화	문 흥 식 (행정 2216)

[별표]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체력 단련실	강 습	1인/1월	20,000	30,000
	자유이용	1인/1시간	1,000	2,000
체육관	강 습	1인/1월	20,000	30,000
	자유이용	1인/2시간	1,000	2,000
	대관	평 일	1회/2시간	20,000
		공휴일	1회/2시간	30,000
극장	강 습	1인/1월	20,000	30,000
	자유이용	1인/2시간	1,000	2,000
	대관	평 일	1회/2시간	20,000
		공휴일	1회/2시간	30,000
다목적홀	강 습	1인/1월	30,000	45,000
	자유이용	1인/1시간	2,000	3,000
회의 및 강의실		1인/1시간	무료	10,000
취미 · 교양교실		1인/1월	15,000	
사회체육교실		1인/1월	15,000	
청소년수련활동		1인/1일	5,000	
청소년캠프		1인/1일	10,000	
교육 및 연수		1인/1일		10,000

-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모자는 무료로 한다.
- 청소년이라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 청소년 단체사용(20인 이상)의 경우는 20% 감경한다.
- 기준시간의 50%이상 시간초과시 다음회 이용료 전액을 적용한다.
- 체력단련실은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 (수련시설의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청소년단체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관리방법, 위탁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2.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3.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삭제 ('99. 8. 7.)

④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2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위탁운영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련시설 운영능력을 비교하여 선정하되, 수련시설 운영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제2항의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21
----------	------

제안년월일 : 2003. 5. 17.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 1. 수 정 이 유

- 청소년수련관을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및 사무직원의 정수와 보수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의 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4조)
-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제1항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및 사무직원의 정수와 보수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유재산사용)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b>제4조(설치운영)</b> ① 시장은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청소년기본법령</u>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p> <p>② 제1항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조(설치운영)</b> ①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p> <p>② 제1항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이사회 및 사무직원의 정수와 보수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의 규정으로 정한다.</p>
<p><b>제5조(기본재산)</b> ①(생략)</p> <p>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b>제5조(기본재산)</b> ①(원안과 같음) <u>〈삭 제〉</u></p>
<p><b>제8조(생략)</b></p>	<p><b>제8조(공유재산사용)</b> 시장은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b>제9조(생략)</b></p>	<p><b>제9조(원안 제8조와 같음)</b></p> <p><b>제10조(원안 제9조와 같음)</b></p>